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부설주차장의 화물 하역 공간 설치기준 마련 〉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7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78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부설주차장의 화물 하역 공간 설치기준 마련(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	3
※ 참고자료	13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221827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3.
3. 회 부 일 : 2026. 4.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화물의 하역에 필요한 공간 등을 고려한 주차시설 및 주차구획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출입로의 폭과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화물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거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하여 화물의 하역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 부설주차장에 마

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인근 도로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부설주차장의 화물 하역 공간 설치기준 마련(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게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④ ~ ⑰ (생략)	-----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이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 ⑰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함¹⁾.

현행법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별표1²⁾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물의 면적에 따른 주차대수에 관한 기준(예시: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m²당 1대)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출입이 가능한 하역 공간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 판매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으로, 주차장 구조상 화물자동차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화물 하역 공간 부족으로 인근 도로 등에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정차하여 화물을 하역하는 등의 문제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19조제1항에서 부설주차장에는 화물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별표1의 비교³⁾에서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

2)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참고1. 참조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비고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차장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도 화물자동차의 주차 및 하역 공간 확보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둘째,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출입과 화물 하역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출입로의 너비·높이, 하역 공간 구획 등에 관한 법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인데 이는 주차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임.

현행법 제6조4)에서는 주차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준을 따로 규정하면서5), 같은 조 제2항에서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도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화물 하역 공간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6).

4)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5) 현행법 제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주차단위구획의 크기, 주차장의 종류별 출입구의 구조·너비, 차로의 너비, 주차장의 높이 등 주차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참고2. 참조)

6)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상 부설주차장의 가족배려주차구획(서울시 강남구, 광명시, 구미시), 어르신 주차구획(광명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서울시 강남구)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현재 화물 하역 주차구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는 확인되지 않음.(참고3. 참조)

그리고, 「주차장법」 외에도 주택 관련 법령에서 주택에 부대한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하역 공간 확보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건축 관련 법령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하역 공간의 규모·규격·위치 및 표시기준, 화물자동차의 동선체계 등 하역 공간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른 하역 공간 설치에 관한 규정 >

구분	해당 조문
주택 관련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u>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건축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37호) 제34조(주차장 계획) ① 주차계획은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되, 특히 장애인·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주차구획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 ②~⑥ ⑦ 이삿짐차량이나 소방차량 등의 하역 및 조업에 필요한 공간과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⑨ 지하주차장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한다. 1.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 환기 및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외부 지상으로의 피난계단 등을 설치한다. 2.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의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3.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관리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 마다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이 설치된 기둥 등은 색채를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장애인 및 여성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⑩ 화물조업주차면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한다.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면적 2,000㎡ 이상인 일반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의 5%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한 대수가 10대를 넘는 경우에는 10대까지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한다. 3. 화물조업주차면의 설치 위치는 상·하역작업 전·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편의를 위해 <u>가급적 엘리베이터·계단, 무인택배함 주변, 사업장으로의 최단경로 상에 배치</u>한다. 4. 화물조업주차의 동선체계는 화물자동차가 원활히 도착·출발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 5. 조업주차면의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u>화물조업주차구획임을 식별 가능하도록 구획 내 ‘화물조업’ 노면표시 및 ‘화물조업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u>(수량은 규모, 위치,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8-11호, 2018.2.20.) 별표6 [건축물 심의기준] 제10조(주차장계획) ② 일반건축물 주차계획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장애인주차구획은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및 승강기 등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층별 분산배치 하여 주차통로의 횡단을 최소화하고, 주차구획은 3.3m×5.0m로 총 주차면의 3%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획의 기둥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확장형주차면은 총 주차면의 3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주차대수가 50대 미만인 경우 적극 권장한다. 3. 경차주차면은 총 주차면의 10%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4. 조업주차면은 지하1층(주차 최상층)의 승강기 인근으로 배치하고, 장애인주차면 이상의 규격으로 계획하여 하역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상업시설의 경우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과 주차관제설비 중 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적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차단기는 가급적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셋째, 하역 공간의 설치 필요성, 화물자동차 출입 및 하역 작업을 위하여 요구되는 주차장의 시설구조나 하역 공간의 크기 등은 동일한 종류의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시설물의 위치·규모, 해당 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크기나 이용 빈도 등 해당 지역 및 시설물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그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하역 공간이나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증가되는 경우 승용차의 주차면은 감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승용차 주차 수요가 많은 시설물이나 주변 지역에서는 또 다른 요인으로 교통혼잡이 유발되거나 주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

넷째, 현행법 제1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종류와 시설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즉, 부설주차장의 수용 규모에 관한 기준임.

따라서, 화물 하역이 가능하도록 주차장의 시설구조나 하역 공간 구획에 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규정은 부설주차장의 수용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9조보다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6조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함.

다섯째, 개정안과 같이 부설주차장의 화물 하역 공간 설치기준을 새로 정하여 이를 의무화하는 경우, 시행 시점에서 기존 설치가 완료된 부설주차장이나 설치 중인 주차장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차장의 구조나 설계 변경, 주차면 재구획 등 시설 개선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구조나 접근도로의 구조 상 화물자동차의 출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기설치된 부설주차장이나 설치 중인 부설주차장에도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경우 예외 요건 및 적용 유예기간을 어느 수준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법령에 부설주차장 내 하역 공간 및 승용차 외 자동차 주차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 및 상황의 특성과 관계없이 부설주차장 내 화물자동차 하역 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경우 주차장 본래의 이용 질서 및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화물 하역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역 공간 확보가 의무화될 경우 재산권 행사를 제약(화물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출입구 높이 상승 및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 너비 확대 등 추가 건축비 상승 요인)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울산광역시 남구

도심지 및 기존 상업지역의 경우 물리적으로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곤란한 시설물이 많고, 특히 기존 건축물이나 협소한 대지에서는 화물자동차 진출입이 가능한 주차장 출입로 폭·높이 및 하역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상당수 시설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기보다 설치의무 면제 또는 설치비용 납부(설치의무면제금 등)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개정을 통한 화물차 하역 공간 확보 및 도로상 불법 주정차 해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 + \{(\text{시설면적} - 150\text{㎡}) / 100\text{㎡}\}$]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

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

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민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 옆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2) 1) 외의 노외주차장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가 2개 이상 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 우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

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10.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보행자가 경보장치의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경보장치는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또는 자동이송주차장치(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해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방법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

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나.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② 삭제 <2020. 6. 25.>

③ 삭제 <1996. 6. 29.>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 시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참고3

조례상 별도 주차구획 규정 사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한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③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7에 따른다.
-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이동약자”라 한다) 또는 이동약자를 동반한 사람

제11조의5(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획은 국가유공자가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③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은 별표 9에 따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별표 10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이나 신분증서 및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국가유공자가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거부 또는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거나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2(어르신 주차구획의 설치) ① 어르신(“어르신”이란 70세 이상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2~4퍼센트(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본다)로 한다.

③ 어르신 우선 주차구획선과 문구는 황색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제20조의3(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6] 서식에 따른다.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가족배려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

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